

【 10 】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6. 9. 25.

제출자 : 양 주 군 수

□ 제정이유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재해대책 및 예방에 소요되는 기금을 마련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 하자 함.

□ 주요골자

가.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방법 및 기금의 용도를 정함. (안제3조, 제4조)

나. 재해대책기금 운용에 따른 회계관리, 회계공무원, 결산 및 보고내용을 정함.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  
여 적립된 양주군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양주군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2. 기금출납원 :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결산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방도 경성 · 복구도 정성’

## 경 기 도

11131

우편) 441-701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 1 / 4751 (행정) 4751 / 담당 경전재

문서번호 건설 13900 -1763

시행일자 1996. 7. 24. (년)

(경유)

받음 받는곳 참조

참조 자연재해담당과장

|        |                                |              |   |
|--------|--------------------------------|--------------|---|
| 선<br>결 | <del>48</del><br><del>22</del> | 지<br>시       |   |
| 점      | 일자<br>시간                       | 1996. 7. 24. | 결 |
| 수      | 번호                             | 13916 (1996) | 재 |
| 처      | 리 과                            |              | 공 |
| 담      | 당 자                            |              | 람 |

제목 조례제정 및 개정 표준(안)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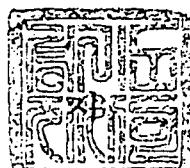
- 내무부 재대본 13930-221 (96. 7. 16) 호와 관련입니다.
-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제정 표준(안)과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 표준(안)을 따로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 또는 개정하여 앞으로 재해대책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덧붙임 1.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제정 표준(안) 1부.  
 2.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 표준(안) 1부. 끝.

경 기 도 지

건설교통국장 전결

받는곳 러



’96. 7

# 災害對策基金 運用管理條例標準(案)

(市・道 畏 市・郡・區)

内務部

##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표준(안)

(시·도 및 시·군·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50~70범위에서 자치단체 재정 형편에 따라 조정)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총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시(도, ○○시, 군, 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시.도는 자연재해담당국장, 시.군.구는 자연재해 담당국장 또는 과장

2. 기금출납원 : 자연재해대책담당과장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결산 및 보고) ①기금 운용관은 회계연도 마다 전년도의 기금 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 말까지 시장(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시·군·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